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길자 의원 발의】



2021. 8. 3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77호로 2021년 8월 19일 김길자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안 제5조)
- 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바.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안 제7조)
- 사. 수탁기관에 관한 지도·감독(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민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 (2021. 8. 10.~ 8. 17. / 8일 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2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 장애인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장애인 가족의 구성원은 장애인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이 미흡한 바,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